

지시대 설치 관련 안내문

- 적재물 수송용 보조 지지대는 적재된 화물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보조장치이며, 화물 운송시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적재화물 이탈방지기준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⑯ 생략, ⑳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㉑~㉔ 생략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8호 생략, 9.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②항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호 생략, 2.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송할 것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제2호 관련)

덮개·포장 및 고정방법

1.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포장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덮개·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덮개 또는 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코일
 - 라. 대형 식재용 나무
 -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화물로서 덮개 또는 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화물
2.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화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
 -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최소 4개의 고정점을 사용하고 하중 분배를 고려해 기계를 배치해야 한다.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송 중에 화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재부에 고정해야 한다.
 - 다. 코일: 코일의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 구조물 또는 썬기 등을 사용해 고정해야 한다.
 - 라. 대형 식재용 나무: 화물을 차량의 길이방향으로 적재하고 적재된 화물은 차량의 너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화물의 하중을 고려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적재해야 한다.
 -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화물은 고정틀(마주보는 면 사이의 간격이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은 형태)을 활용해 적재하고,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 평면 화물이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벨트 또는 로프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덮개·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고정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고정하되, 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고정해야 한다.